

# 고성군 요트산업 육성조례안

의 안 번 호	1152
------------	------

제출년월일 : 2009. 3. 3.  
제출자 : 고성군수

## 1. 제정이유

남해안시대 핵심선도 산업인 요트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요트인구의 저변확대와 요트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우리군의 새로운 소득기반 창출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요트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안 제3조)
- 고성군 요트산업자문위원회의 설치 · 운영(안 제6조)
-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한 마리나시설 조성(안 제15조)
- 요트경기대회 개최(안 제17조)
- 요트학교의 설치 · 운영(안 제20조)
- 요트산업의 재정지원(안 제24조)

## 3. 참고사항

### 가.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09-87호(2009. 1.29 ~ 2009. 2.17)
- 제출의견 : 없음

### 나. 관련법령 및 근거

- 수상레저안전법, 항만법, 어촌어항법, 동 · 서 · 남해안권발전 특별법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 4. 본 문

- 덧붙임과 같음

## 고성군 조례 제 호

# 고성군 요트산업 육성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안시대 핵심선도 산업인 요트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요트인구의 저변 확대와 요트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우리군의 새로운 소득기반 창출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트”란 유람·항해·경주 따위에 사용하는 범선이나 동력선을 말한다.
2. “요트산업”이란 요트 등을 이용한 해양레저스포츠 활동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제조·수리·교육시설을 포함한 요트관련 제반 산업을 말한다.
3. “마리나”란 요트와 오락용 보트를 위한 계류시설·수역시설·외곽시설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시설을 갖춘 항만시설로서 클럽하우스, 주차장, 요트·보트야드 및 연수시설, 녹지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4. “요트기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6호라목 및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의 시설중 모터보트·요트 및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기반시설을 말한다.
5. “사업시행자”란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트관련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자 또는 수탁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 제2장 종합계획

**제3조(종합계획 수립)** ① 군수는 요트산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요트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요트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관내 지역별 요트산업 육성계획
  3. 고성군 마리나 개발계획
  4. 그 밖에 요트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고성군 요트산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변경)** 군수는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고성군 요트산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경상남도 계획과의 연계)** 군수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종합 계획을 수립·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상남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3장 요트산업자문위원회

**제6조(설치)** 요트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군수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고성군 요트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제적인 요트관련 경기대회 및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요트제조시설 및 마리나 등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요트산업의 수요창출과 대중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요트 관련 산업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요트산업업무 담당실과장(사업소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성군의회 요트관련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또는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요트산업에 국내외적 인지도를 가진 저명인사
3. 요트 또는 해양레저스포츠, 체육 등과 관련하여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강의 또는 연구하고 있거나 관련분야의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4. 경상남도 단위의 요트산업관련 협회·단체의 이사급 이상인 자
5. 요트관련 경기·행사·교육 등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의 경력자
6. 그 밖에 군의 요트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략기획, 대외협력, 운영관리, 산업육성 등 그밖에 필요한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요트산업업무 담당주사로, 서기는 요트산업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장 요트산업 육성 · 지원

**제14조(시책 발굴 및 지원)** 군수는 요트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제 규모의 행사 유치 등 요트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마리나 조성)** ① 군수는 요트관련 편의시설 구축과 해양레저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마리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마리나 시설조성시 예산의 중복 투자 방지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와 협의 ·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교육 및 강좌 개설)** ① 군수는 요트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요트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요트교육 · 강좌나 요트클럽 육성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트교육 · 강좌 및 요트클럽 육성프로그램 운영시 필요할 경우 제20조에 따른 요트학교, 요트관련 단체(법인을 포함한다)대학 등에 사업의 일부 및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수강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7조(요트경기대회 개최 등)** ① 군수는 군의 요트산업 발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요트경기대회 ·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회 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트 학교 또는 전문 해양스포츠 및 요트관련 단체, 대학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회개최 및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8조(요트선수단 구성 · 운영)** ① 군수는 각종 국내외 요트경기 대회 참가를 위한 요트대표 선수단을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선수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요트선수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9조(요트산업관련 단지조성 등)** ① 군수는 「동 · 서 · 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 안에 요트산업 핵심기술 연구센터, 전시관, 수상레저기구관련업체 등의 입주를 위하여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요트산업관련 과학기술 단지를 경상남도지사의 위임범위 내에서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개발구역 안에 요트산업관련 투자유치를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의 위임범위 내에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 제5장 요트학교

- 제20조(설치)** 군수는 요트선수의 육성과 전문가 양성, 요트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요트체험 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고성군 요트학교(이하 “요트학교”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제21조(기능)** 요트학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 학생 · 일반인 대상 해양레포츠 체험, 요트 이론 및 실기교육
2. 조난 시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 등 해상안전 교육
3. 기본 · 레이싱 · 세일링 · 크루징 등 요트기술 교육
4. 1일 체험 및 장 · 단기 교육
5. 요트클럽 · 요트 꿈나무 육성, 전문가 양성 등 프로그램 운영
6. 요트관련 행사 주관, 요트 물품 · 공공재산의 관리운영 등 군수가 위임 · 위탁하는 사항

- 제22조(조직구성)** ① 요트학교에는 학교장과 학교의 제반사무처리를 위하여 운영관리팀, 전문강사팀, 홍보 마케팅팀 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강사팀에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강사를 둘 수 있다.

**제23조(위탁운영 및 지원)** ① 군수는 요트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 해양레포츠 및 요트산업관련 법인·단체, 대학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요트학교 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 그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고성군에서 요트학교를 직접 운영코자 하는 때에는 교육에 따른 수강료를 정하여 징수한다.

④ 제2항제3항에 따른 직영 및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장 재정지원 등

**제24조(보조금 등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방파제·도로·철도·용수시설 등 요트산업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단지 조성 및 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2. 제19조제2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3. 요트기반시설, 마리나 시설 등의 조성
4. 요트학교 설치·운영
5. 그 밖에 요트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5조(부담금 등의 감면)** 군수는 요트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고성군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동·서·남해안권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경상남도지사의 위임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게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및 하천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7장 보칙

**제26조(보조금 등의 지원방법)**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관리방법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성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7조(예산지원 사후관리)** 군수는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지원받은 기업 및 그밖에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